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

제191호 2009. 4. 1. (수)

【고 시】

- 정선군고시 제2009-31호 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 1
- 정선군고시 제2009-32호 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 2
- 정선군고시 제2009-33호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 3
- 정선군고시 제2009-35호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고시..... 4
- 정선군고시 제2009-36호 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6
- 정선군고시 제2009-37호 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7
- 정선군고시 제2009-38호 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8
- 정선군고시 제2009-39호 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9
- 정선군고시 제2009-40호 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고시.....10

【공 고】

- 정선군공고 제2009-194호 2009년 정선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기관(위탁단체) 지정
공
고.....11
- 정선군공고 제2009-196호 소하천 점·사용(변경)허가 공고.....14
- 정선군공고 제2009-198호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15
- 정선군공고 제2009-199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취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..... 17
- 정선군공고 제2009-208호 소하천 점·사용허가 공고.....18
- 정선군공고 제2009-213호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.....19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3, FAX:560-2592)

정선군고시 제2009-31호

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

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
하천 점·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0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-		
	대 표 자	정선군수 (산업경제과장)	주 소	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
하 천 명		골 지 천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강원도 임계면 낙천리 337-3번지외 32필지		
	허가량	A = 2,972㎡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18일 ~ 영구 공사기간(2009년 3월 13일 ~ 2009년 9월 30일)		
	목 적 및 사 유	2009년 오지종합개발(봉산리농로외)사업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		

정선군고시 제2009-32호

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

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
하천 점·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0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-		
	대 표 자	정선군수 (산업경제과장)	주 소	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
하 천 명		골 지 천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강원도 북면 유천리 746번지외 7필지		
	허가량	A = 461 m ²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18일 ~ 영구 공사기간(2009년 3월 13일 ~ 2009년 9월 30일)		
	목 적 및 사 유	2009년 오지종합개발(유천리교량및농로)사업에 따른 하천부지 점용		

정선군고시 제2009-33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고시

『공유수면관리법』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점·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0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정 선 군 청		
	대 표 자	정선군수 (산업경제과장)	주 소	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
하 천 명		공유수면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012, 1014번지		
	허가량	A=71㎡ (H-BEAM교량, 폭:4M, 연 장:7M)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18일부터 ~ 영구 2009년 03월 18일 ~ 2009년 09월 30일		
	목 적 및 사 유	2009년 오지종합개발에 따른 농로진입교량개수를 위한 점용		

정선군고시 제2009-35호

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고시

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 8조에 의거 임대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4.

정 선 군 수

농업기계 임대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....

□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?

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다양한 부착용 기종을 임대하여 농업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유도하고 사전 교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□ 누가 임대할 수 있나요?

정선군에 거주하며 임대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이용기간 : 3일 이내

※ 이용방법 : 방문, 전화 예약(추후 인터넷 가능)

※ 임대기종 : 39종 102대(붙임 자료 참조)

※ 임대료 : 붙임 임대료 참조

□ 정선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어디에서 수행하나요?

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합니다.

지금 방문하시면 됩니다.

지금 전화주셔도 좋습니다.

※ 문의 : 560-2555, 562-1222

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

농업기계 임대장비 임대료

기 종 명	규 격	대 수	임대료	비 고(특기사항)
퇴비살포기	3.5톤	2	20,000	트랙터용
	1.5톤	2	10,000	
	경운기일체형	2	20,000	
비료살포기	40ps	5	7,000	트랙터용
콩 탈곡기	40ps	2	7,000	
	전기식	2	5,000	
땅속작물 수확기	대	2	16,000	트랙터용
	중	2	10,000	
	경운기일체형	3	10,000	
돌 수집기	50ps이상	5	10,000	트랙터용
콩 예취기	1조식	6	10,000	자주식
콩 정선기	전기식	3	20,000	
중경제초기	35ps이상	1	8,000	트랙터용
쟁 기	2련	2	5,000	
	3련	3	8,000	
탈 망 기	전기식	1	5,000	
비닐 수거기	250mm(유압)	1	9,000	트랙터용
크랑크로터베이터	40ps	2	19,000	
	50ps	3	26,000	
옥수수탈곡기	전기식	2	5,000	
두둑형성기	60ps	3	30,000	트랙터용
논두렁조성기	35ps	1	10,000	
종합작업기(이앙기)	승용형	2	45,000	자주식
석재파쇄기	90ps	1	30,000	트랙터용
마늘파종기	경운기용	2	15,000	
비닐피복기	관리기일체형	6	10,000	
구 굴 기	관리기일체형	5	10,000	
톱밥·목재 파쇄기	300mm	1	90,000	자주식
	250mm	1	68,000	
목재파쇄기	250mm	1	50,000	트랙터용
톱밥제조기	250mm	1	10,000	
하우스퇴비살포기	1톤	3	40,000	자주식
심토파쇄기 (진동식)	35ps	3	7,000	트랙터용
	55ps	3	10,000	
심토파쇄기 (유압식)	35ps	1	16,000	
	55ps	1	20,000	
파이프정성형기	Φ23~25용	3	10,000	전기식(밴딩+정형)
원형결속기	50ps이상	2	50,000	트랙터용
사각베일러	45ps	3	30,000	
랩 피복기	120*120cm이상	2	40,000	
반전집초기	35ps	3	10,000	
그래플(베일집게)	40ps이상	2	5,000	
디스크모어	50ps	1	10,000	

정선군고시 제2009-36호

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

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
하천 점·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6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-		
	대 표 자	이 학 수	주 소	강릉시 포남동 1192번지 고려맨션 1차 2동 206호
하 천 명		임 계 천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494천(367번지선)		
	허가량	A=1,054㎡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23일 ~ 2013.12.31		
	목 적 및 사 유	농경지사용		

정선군고시 제2009-37호

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

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
하천 점·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6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—		
	대 표 자	정선군수 (산업경제과장)	주 소	강원도 정선군 봉양리 267
하 천 명		봉 산 천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강원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산10-1구(390번지선)		
	허가량	A=3,500㎡ V=3,500㎥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23일 ~ 2009.08.31		
	목 적 및 사 유	구절지구 시가지 정비사업 연약지반 성토재(토석채취등)		

정선군고시 제2009-38호

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

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
하천 점·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6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—		
	대 표 자	김 장 열	주 소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1반 산8-1번지
하 천 명		임 계 천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13-1번지외 2필지		
	허가량	A=2,120㎡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24일 ~ 2013.12.31		
	목 적 및 사 유	농경지사용		

정선군고시 제2009-39호

하천 점·사용 허가고시

『하천법』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
하천 점·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6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—		
	대 표 자	동 면 장	주 소	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393-1번지
하 천 명		어 천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일원		
	허가량	A=2,796㎡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착수일로부터 30일간		
	목 적 및 사 유	토종물고기 서식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큰돌넣기사업에 따른 하천부지점용		

정선군고시 제2009-40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 고시

『공유수면관리법』 제5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점·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9. 03. 26.

정 선 군 수

시행 (점용· 사용) 자	상호 및 명칭	-		
	대 표 자	최 낙 순	주 소	정선군 동면 석곡리 262-1번지
하 천 명		공유수면		
공사 (점용· 사용) 개요	위 치	정선군 동면 석곡리 258번지선(262-1구)		
	허가량	580㎡	폐천부지 예상면적	□□없음□□
	기 간	2009년 03월 23일 ~ 2011년 12월 31일		
	목 적 및 사 유	주택관리부지를 위한 점사용		

정선군공고 제2009-194호

2009년 정선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기관(위탁단체) 지정공고

2009년 정선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사업기관명(수탁단체) : 정선지역자활센터(대표 최원재)

나. 사 업 기 간 : 2009. 03. ~ 2009. 12

다. 사 업 내 용 : 2009년 정선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

2009. 03. 17.

정 선 군 수

붙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안내 1부.

정선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용안내

**아이 키우기 힘드시죠?**

나라에서 다 알아서 키워드리진 못하지만.....

부모의 돌봄이 곤란한 시간에는

정선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

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!!!

01. 아이돌보미 사업이 뭐죠?

가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「아이돌보미 전문가」를 파견함으로써,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육아보담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02. 아이돌보미는 어떤 일을 하죠?

아이돌보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양육전문가입니다.

-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
- 놀이 활동
-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
- 학교, 보육시설의 등하원과 같이 아이돌봄과 관련된 활동들
- 숙제검사나 학습준비물 챙기기 등 간단한 학습 돌봄 등

※ 가사활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03. 아이돌보미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
정선군에 거주군민으로 0세(만 3개월 이상) ~ 만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(경증 장애아동도 포함)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. (이용대상 요금표 참조)

- 맞벌이 가구로 육아부담이 심한 가정
- 갑작스러운 일로 일시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
- 보육시설 이외의 시간에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
- 출장 등 업무상 단기간 집을 비워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
- 야근, 외출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

※ 이용시간 : 기본2시간 이상 이용(주간, 야간, 주말, 공휴일 가능)

※ 이용절차 : 상담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(예약은 최소 2일전 완료)

- ※ 이용방법 : 방문, 인터넷, 전화, 팩스, 우편접수
- ※ 이용요금 :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, 이용요금표 참고
- ※ 구비서류 : 사진, 의료보험납입증명서, 등본지참, 기타 구비서류 작성(사무실 비치)
- ※ 문 의 : 정선지역자활센터 563-7121, 주민생활지원실 560-2023

04.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은?

아이수	이용시간	소득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용요금(원)			비 고
		가형	나형	다형	
1명	기본 2시간	2,000	8,000	12,000	다형의 경우 심야 및 주말 요금 시간당 6,000원
	추가시간당	500	3,000	5,000	
2명	기본 2시간	3,000	12,000	15,000	
	추가시간당	700	4,500	7,500	
3명	기본 3시간	4,500	18,000	22,500	
	추가시간당	1,100	6,700	11,200	

※ 상기 요금표는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.

05. 이용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른 요금유형은 어떻게 됩니까?

소득유형	전 국 가 구 평 균 소 득
‘가’ 유형	전국가구 평균 소득 50% 이하
‘나’ 유형	전국가구 평균 소득 51%~100% 이하
‘다’ 유형	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초과

※ 기본가격(2시간 단위)은 1만원이며 저소득층 ‘가’유형의 경우, 이용요금의 8천원(80%)은 정부지원, 2,000원(20%)은 본인부담이며, ‘나’유형은 본인 부담비율이 80%, ‘다’유형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

06. 정선군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누가 수행하나요?

우리군의 저소득층의 희망지기 ‘정선지역자활센터’(노인복지센터)에서 추진합니다.
(2009.03. 아이돌보미사업 수행기관 위탁 지정)

-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
-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고 싶은 65세 이하의 희망자

※ 문의 : 563-7121~2

(자활센터 산하 ‘노인복지센터’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담당자)
560-2023(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)

정선군공고 제2009-196호

소하천 점·사용(변경)허가 공고

『소하천정비법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
점·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. 03. 20.

정 선 군 수

시행(점용·사용)자	상호 및 명칭	한국광해관리공단		
	대 표 자	이이재	주 소	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-6번지 석탄회관
소 하 천 명		미륵천		
공사(점용·사용)개요	위 치	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433-18번지선(433-4번지)		
	면 적	A=2,870㎡(당초) A=1,142㎡(변경)	폐천부지 예상면적	“없음”
	기 간	2008년 06월 05일 ~ 2012년 12월 31일		
	목 적 및 사 유	석공-함백광업소 방제개 폐수정화시설부지관리를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부지 사용에 따른 점용면적 변경		

정선군공고 제2009-198호

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09. 03. 20.

정 선 군 수

1. 조례명 :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취지

가. 농업용 양수기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양수기 운영·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가. 양수기 보관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청 및 읍·면으로 개정

나.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에서 본청은 농업정책과장 읍·면은 산업개발담당 으로 개정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FAX 560-2599)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(전화 560-298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참고사항

붙임 :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”를 “정선군 양수기 운영·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” 를 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농업기술센터”를 “군청 및 읍·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, “기타 지역”을 “별도의 장소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중 “농업기술센터”를 “군수”로, “농촌지도과장”을 “본청은 농업정책과장, 읍·면은 산업개발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”을 각각 “군수는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”을 각각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선군공고 제2009-199호

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취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

강원도고시 제1997-23호(1997.2.6)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한 「남면관광레저리조트」 개발사업의 취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공고합니다.

2009. 03. 23.

정 선 군 수

1. 사 업 명 : 남면관광레저리조트
2. 위 치 :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475번지 일원
3. 면 적 : 5,020,000㎡
4. 사업내용 : 스키장(18면), 호텔(100실), 콘도미니엄(500실), 문화·스포츠센터 등
5. 취소사유 :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장기 미추진에 따른 취소
6. 공고기간 : 2009. 3. 23 ~ 2009. 4. 6.(15일간)
7. 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: 공고기간내 정선군청 산업경제과로 서면 제출
6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업경제과(전화 033-560-243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공고 제2009-208호

소하천 점·사용허가 공고

『소하천정비법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
점·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. 03. 26.

정 선 군 수

시행(점용·사용)자	상호 및 명칭	—		
	대 표 자	동면장	주 소	정선군 동면 화암리 393-1번지
소 하 천 명		화표동천		
공사(점용·사용)개요	위 치	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1306번지(천)		
	면 적	V=936m ³	폐천부지 예상면적	“없음”
	기 간	2009년 03월 20일 ~ 2009년 04월 17일		
	목 적 및 사 유	어천(풍촌교주변)큰돌넣기사업에 따른 토석채취		

정선군공고 제2009-213호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,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(주소, 성명, 전화 번호 포함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9. 03. 31.

정 선 군 수

가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
나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(09. 3.31 ~ 4. 13.)

다. 공람장소 :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및 읍·면사무소

[정선읍, 고한읍, 사북읍, 신동읍, 동면, 남면사무소]

라. 계획의 범위 : 도시계획 재정비 ⇨ 정선읍, 고한읍, 사북읍, 신동읍, 동면, 남면 행정구역 전역(정선읍, 동면은 지방도 및 군도 결정 사항임) 군계획시설 결정(정선읍, 임계면)

마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 결정(변경) 개요

1) 도시계획 재정비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도시지역(주거, 상업, 공업, 녹지지역) 및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
- 용도지구 결정(변경) : 개발진흥지구, 고도지구, 경관지구, 미관지구, 등
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제1·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
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도로, 공원, 녹지, 학교, 주차장, 광장, 하천, 철도 등

2) 정선읍 군계획시설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

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기정 소2-35호선 L=880m B=8m

변경 소1-20호선 L=891m B=10~15m

3) 임계면 군계획시설 결정(시설 : 주차장) (신설)

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: 주차장 1,885㎡ (송계리 781-3번지 일원)

바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면 및 조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
사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 등)결정(변경)(안)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

공고로 갈음하며,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
아. 의견제출장소 및 방법 : 공람기간내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및 해당 읍·면사무소
서면 제출

자. 본 열람(안)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
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
(033-560-2132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